

기초생활수급자 시내버스 무료화

3-7

교통행정과

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시내버스 무료화로 교통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모

□ 기초수급자 현황

- 관내 기초수급자 : 10,184명, 6,405가구(2014. 6. 30. 기준)
 - 초·중·고 학생 수(1,512명) : 초(447명), 중(443명), 고(622명)

□ 추진계획

<2014년 ~ 2015년>

- 기초수급자 시내버스 무료화 세부 추진계획 수립
 - 시내버스 업체 관계자 간담회 개최
 - 개인·법인택시 이용객 감소관련 관계자 의견수렴
 - 보조대상 및 방법에 대한 검토, 세부 추진일정 확정 등

<2016년>

- 시내버스 무료화 시범실시
 - 대 상 : 기초수급자 중 초·중·고등학생(1,512명)
 - 사업비 : 연간 154백만원

<2017년 이후>

- 시내버스 무료화 전면 시행
 - 대 상 : 전체 기초수급자(10,184명)
 - 사업비 : 연간 1,400백만원
 - ※ 시내버스 요금인상시 추가부담(100원 인상시 연간 120백만원 추가소요)

□ 연도별 투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사 업 명	사업량	사 업 비							
		계 (재원별)	기 투자액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
기초생활수급자 시내버스 무료화	'16~'19 (4년간)	4,354 (사비100%)	-	-	-	154	1,400	1,400	1,400

※ 기초수급자 1인당 월 10회 무료이용 기준

□ 문제점 및 대책

- 기초수급자 무료화 추진 시 민원발생 우려
 - 택시업계 수입감소에 따른 반발
 - 교통약자(노약자, 장애인 등) 형평성 제기
 - 기초수급자 교통카드 전매 또는 타인사용 우려
- 무료화에 따른 재정지원금 과다 소요
 - 무료환승 30분, 학생·카드할인, 벽지노선 지원 등으로 연간 62억원 버스업체 재정지원
 - 1인당 월 10회 무료이용시 연간 약 14억원 추가소요
- 생계비 및 교통비 중복지급에 따른 조례개정 필요
 - 교통비 지원시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존에 지급되는 생계비 차감 불가피
 - 「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대한 개정 필요(사회복지과)

□ 타 시군 사례

- 경남 진주시
 - 운행구간/대수 : 진주시 반성면 일원 / 5대
 - 무료이용 대상 : 65세 이상 노약자, 1·2급 장애인과 동반 보호자 1인
 - 시행근거 :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 개정으로 무료이용 대상 및 지원근거 확보
- 전남 신안군
 - 운행구간/대수 : 신안군 전역 / 38대
 - 무료이용 대상 : 만 6세 미만 어린이, 65세 이상 노약자, 1·2·3급 장애인과 동반 보호자 1인 등
 - 시행근거 :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개정으로 무료이용 대상 및 지원근거 확보

□ 기대효과

- 시내버스 이용률 증가(약 5.5%, 일 평균 5.7만명 ⇒ 6만명)에 따른 교통약자 편의증진 및 버스업체 경영합리화 도모
- 기초생활수급자 가계부담 경감효과 거양(연간 약 14만원/인)

